

「바보의 나눔 적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바보의 나눔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, 1인 2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.

제5조 최초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 단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제6조 적립방법

이 예금의 추가 적립시,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단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회 최저 1천원이상으로 합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고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④ 이 예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우대이율을 가입일 당시 고시한 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.
 -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의 경우 연 0.5% 우대
 -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전액을 『바보의 나눔』 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.5% 우대
 - 이 예금의 신규일에 만기해지금 일부를 『바보의 나눔』 재단법인으로 기부토록 자동이체 등록하는 경우 연 0.3% 우대

제8조 기타

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『바보의 나눔』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. 단, 본항의 기부금은 2017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4년 5월 2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